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위원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2. 제 안 이 유

○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시설 설치 예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리카드 비치 및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공중
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안전관리시설 설치 예외 기준과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정비함(안 제5
조 및 제9조).
나. 관리카드 비치 및 기록 의무를 규정하고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사유를
신설함(안 제10조, 제12조의2).
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별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0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nickel9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복지증진 도모함”을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정·승인된”을 “지정된”으로 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할”을 “설치하거나 비치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력공급 여건 및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해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 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제6조”로,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9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관리대장의 비치)”를 “(관리카드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을 “공중화장

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로,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을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상황”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3.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1호			
1) 법 제6조의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2) 법 제10조의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나. 유료화장실 표시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2호			
1) 법 제11조제4항의 표시부착 위반		10	20	30
2) 법 제11조제5항의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3호			
1)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2)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라. 법 제19조의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4호	10	20	30
마. 법 제14조의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치 연도	관리책임 공 무 원			소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급				
	관리주체								성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 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 면 시 설	난 방 시 설	냉 방 시 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 누	수 건(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 타	
										내 부	외 부		
시설관리 내역		년월일	관 리 사 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 리 사 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 리 사 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제공하여 주민의 <u>복지증진 도모</u>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u>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u> ----- -----.
제3조(적용 범위) ① (생략)	제3조(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u>지정·승인된</u>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 ----- ----- ----- ----- ----- ----- <u>지정된</u> ----- -----.
제4조의2(시장의 책무) <u>시장</u> 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의2(시장의 책무) <u>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
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
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 · 그림
· 사진 · 화분 등을 할 것

② (생략)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로 한다. 다만, 전력 공급이 어려운 공중화장실에는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

제5조(설치기준)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설치하거나
비치 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만, 전력
공급 여건 및 관리자의 현장 대
응시간 등을 고려해 시장이 안
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
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

----- 제6조-----

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③ (생략)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 3. (생략)

4.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5. (생략)

6.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할 것. 다만,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위해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현행과 같음)

<삭제>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신 설>

제18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상황 -----.

제12조의2(개방화장실 지정 취소)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3.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p><u>선</u>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p> <p>③ (생 략)</p> <p><u>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u> <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u> <u>으로 정한다.</u></p>	<p><u>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u>----- ----- -----.</p> <p>③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	---

관 계 법 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 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 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 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 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 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 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 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 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 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7.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

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15

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⑤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5. 30.]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6., 2014. 12. 3., 2017. 5. 8., 2018. 9. 4., 2018. 12. 18., 2023. 11. 16.>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그 밖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박 병 남

현행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9. 30.] [조례 제2579호, 2024. 9. 30.,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환경정책과(환경정책과) 044-300-42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관리운영비”란 편의·위생용품 및 비상벨 설치 유지관리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신설, 2024. 9. 30.>

[전문개정, 2020. 9. 21.]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20. 9. 21.><개정, 2024. 9. 30.>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2. 불법촬영기기 설치 및 비상벨 이상 유무를 관할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개정, 2023. 7. 10.><개정, 2024. 9. 30.>
3.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된 불법촬영기기를 발견하거나 발견한 자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전문개정, 2020. 9. 21.]

제4조의2(시장의 책무) 시장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9. 30.>

[본조신설, 2020. 9. 21.]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 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개정, 2024. 9. 30.>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개정, 2024. 9. 30.>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20. 9. 21.><개정, 2024. 9. 30.>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할 것<개정, 2024. 9. 30.>
5. <삭제, 2024. 9. 30.>
6. <삭제, 2024. 9. 30.>

②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4. 9. 30.>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 화장실로 한다. 다만, 전력공급이 어려운 공중화장실에는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3. 7. 10.>

[제2항에서 이동, 2024. 9. 30.]<개정, 2024. 9. 30.>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0. 9. 21.><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신설, 2020. 9. 21.><개정, 2024. 9. 30.>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이 경우 물에 잘 분해되어 변기에 버려도 되는 화장지로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 7. 30.)<개정, 2024. 9. 30.>

2. 세정제. 이 경우 손세척을 위한 비누는 교체식 리필형의 물비누로 비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 7. 30.)<개정, 2024. 9. 30.>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0. 9. 21.><개정, 2024. 9. 30.>

1. 관리인을 두어 1일 2회 이상 청소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개정, 2024. 9. 30.>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개정, 2024. 9. 30.>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하여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도색을 실시할 것<개정, 2024. 9. 30.>

4.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화장

설의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신설 2015. 7. 30.)<개정, 2024. 9. 30.>

5.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불법촬영기기 설치 및 비상벨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할 것<신설, 2020. 9. 21.><개정, 2023. 7. 10.><개정, 2024. 9. 30.>

6.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할 것. 다만,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4. 9. 30.>

제9조의2(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본조신설, 2020. 9. 21.]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관리 수준 및 개방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개정, 2024.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제13조(관리운영비의 지원) <개정, 2024. 9. 30.>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지원을 위해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 지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개방화장실 이용자의 평가 및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24. 9. 30.>

③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4. 9. 30.>

1. 시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2. 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3. 그 밖에 화장실 위생수준 및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의무사항 등) ① 제13조에 따라 관리운영비를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것
2.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3. 관리운영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②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를 교부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24. 9. 30.]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개정, 2022. 11. 14.><개정, 2024. 9. 30.>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개정, 2024. 9. 30.>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24. 9. 30.>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

할 것<개정, 2024. 9. 30.>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개정, 2024. 9. 30.>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24. 9. 30.>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개정, 2024. 9. 30.>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개정, 2024. 9. 30.>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제5장 간이화장실 설치·관리

제16조(간이화장실 설치) ① 시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제17조(간이화장실 관리) 간이화장실 관리기준은 제15조제2항의 관리방법에 따른다.<개정, 2024. 9. 30.>

1. <삭제, 2024. 9. 30.>
2. <삭제, 2024. 9. 30.>

제6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8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9. 30.>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

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제7장 과태료 부과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호, 2014. 9. 2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제568호,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28호 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41호, 2020.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78호, 2023. 7. 10.>

이 조례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79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